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일보사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대뇌 출혈성 경색증 고혈압”으로 요양중 개호 신청한 경우.

(89-224호 89. 7. 18. 취소)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노○○

주소 : 강동구 길동

원처분청 : 서울지방노동청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일보사

주 문

서울지방노동청장이 1989. 1. 16.자 “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개호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9. 1. 16.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호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일보사 소속 근로자로서 1987. 8. 12. 작업중 부상을 입고 상병명 “우측대뇌 출혈성 경색증 고혈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에서 1987. 8. 12 ~ 1988. 5. 25. 까지 입원 요양하고 1988. 5. 26 부터 통원 요양하며, 원처분청에 1988. 10. 1 ~ 1988. 11. 30.까지 61일간 개호 신청을 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상병상태가 개호의 범위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개호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개호인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수 없다고 개호 승인을 요구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호 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89. 5. 31 노○○)
2. 원처분청 의견서(1989. 6. 5. 서울지방노동청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9. 4. 13. 강○○)
4. 개호승인 신청서 사본(1988. 11. 노○○)
5. 소견서 사본(1989. 5. 23. 경희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6. 소견서 사본(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 내과 최○○)

7. 소견조회 회신(1989. 6. 30. 경희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과장 유○○)

8. 소견조회 회신(1989. 7. 13.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장)

9. 기 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데, 청구인은 ○○일보사 소속 기능직 근로자로서 1987. 8. 12. 작업중 부상을 입고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요양중 1988. 10. 1 ~ 1988. 11. 3. 까지 61일간 개호신청에 대하여 원처분청이 개호 불승인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에 여부를 살펴 보면,

첫째 : 개호 신청서상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주치의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편마비증의 증상이 남아 있어 식사 및 배변 등을 자신의 힘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타인의 개호가 필요함”으로서 원처분청에서는 주치의에게 청구인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소견조회한바 내용은 “전간 증상이 있고 좌측 편마비가 Grade2 또는 Grade3 정도이고 이같은 운동력 약화와 함께 대뇌손상에 따르는 큰 강직이 좌측 팔, 다리에 동반되어 있어 환자 혼자 힘으로 보행 및 기타 일상운동과 배변 등의 행동을 할수 없어 타인의 개호를 꼭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되며 대뇌손상에 의한 증상의 특성으로 환자의 현증상은 지속적인 치료 및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나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은 “통원가료중인 좌측 편마비 환자는 개호의 범위로 미달되므로 불승인”이며, 노동부 본부 자문의 소견 또한 “통원 가능한 편마비 환자는 개호의 대상이 되지 않음”의 소견으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병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청구인이 요양중인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 부속병원 주치의 및 청구인이 요양한바 있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주치의에게 청구인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소견 조회한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주치의 소견은 “가) 우측수지의 절단상태 : 동 환자는 우측 완관절 부에서 완전절단되어 본원에서 재접합수술 및 신경, 근 수술을 수차 받고 현재 우측수지는 재접합된 상태임. 나) 우 상지의 각관절의 운동상태 : 재

접합 후 우측무지, 제2지, 중수지관절의 강직 및 굴곡 구축을 보임.

- 우측무지 운동상태 : 중수지관절 완전강직 지관절 45도 굴곡 강직
- 우측 제2지 운동상태 : 중수지관절 30도, 굴곡 구축강직, 근위지관절 굴곡60도, 신전30도 원위지관절 10도 굴곡 강직
- 제3, 4, 5지의 운동도 부분 강직 상태를 보임.

다) 우상지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할수 있는지 여부(사용가능) : 우측주관절, 견관절의 기능은 정상이나 우측 완관절 및 수지 관절의 강직과 구축으로 우측 완관절 이하의 기능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많음. 우측 수지의 사용을 요하는 처리 등 작은 현저한 장애가 있음”이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 담당 주치의 소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1987년 8월 12일부터 본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계속적인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중임. 환자는 1987년 8월 당시의 출혈성 뇌경색에 의해 좌측 상하지가 Grade1-Grade2 정도의 편마비를 보인 후 운동력에는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아 현재에도 Grade2-Grade3 정도의 환자스스로의 힘으로 운동을 할수 없는 상태로 생각됨. 수개월전 부터는 뇌경색에 의한 2차적 전간이 발생하여 현재 항 경련제를 병용하고 있음. 환자의 과거력상 우측수지가 절단된 병력이 있어 현재 우측 수지의 정상적인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좌측 및 우측 수지를 모두 사용할수 없어 식사 및 배뇨, 배변 등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서 이상 소견조회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뇌경색에 의한 전간이 발생하고 좌측상하지가 편마비를 보이고 혼자 힘으로 운동을 할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좌측 및 우측 수지를 모두 사용할수 없어 자력으로 식사를 할수 없고 배뇨, 배변 등을 가누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개호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